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273 발의연월일: 2021. 8. 27.

발 의 자 : 이 영 · 권영세 · 김성원

김영식 · 김형동 · 신원식

윤상현 • 이주환 • 태영호

하영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로 2021년말까지 취득세율 1천분의 12를 경감하고 있으며, 재산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 이하의 경우 5년간 50%를 감면하고 있음.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항공기에 대해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국내 타 운송사업 또한 감면을 적용하고 있으나 국내 항공사의경우 외국 또는 타 산업에 비해 과도한 세금 납부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운송산업 지원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취득세 경감을 1천분의 12에서 1천분의 20으로 확대하고 일몰기 한을 5년 연장하는 한편, 재산세를 100%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65조).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1천분의 12를"을 "1천분의 20을"로,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재산세의 100분의 100"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항공사업법」에	과세특례)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	
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	
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u>2021년 12월 31일</u> 까	<u>2026년 12월 31일</u>
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	
제4호의 세율에서 <u>1천분의 12</u>	<u>1</u> 천분의 <u>20</u>
를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	<u>으</u>
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	
서는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	
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	<u>재산세</u>
<u>00분의 50</u> 을 경감한다. <u>다만,</u>	<u>의 100분의 100</u>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	<u><단서 삭제></u>
는 금액 이상인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는 재산세를 경감하지	
<u>아니한다.</u>	